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은주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933
----------	------

발의년월일 : 2020년 10월 16일
발 의 자 : 이은주 의원(1명)
찬 성 자 : 김상훈, 성중기, 정진술, 송명화,
서윤기, 오한아, 이승미, 이준형,
이현찬, 송아량 의원(10명)

1. 제안이유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인구가 천만 명에 육박하는 등 반려동물의 질병 치료 등을 위한 동물병원 이용하는 횟수가 많아지고 있음. 그러나 동물병원마다 진료서비스에 따른 진료비의 차이로 인하여 동물소유자는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불신이 양산되고, 과잉진료로 인한 과도한 진료비 청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해 개선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은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한 시내 동물병원과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에 관한 협약 및 지원에 노력하여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안 제3조 및 제5조)

나. 동물병원 개설자는 정해진 주요 진료항목별 진료비를 진료서비스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이를 반려동물 소유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수 있어야 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수의사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없음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주요 진료항목별 진료비를 자율적으로 표시하는데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내 동물병원을 말한다.
2.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시내 동물병원과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에 관한 협약 체결 및 지원을 통해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진료비용 등의 표시) ① 시장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자율적으로 표시해야 할 반려동물 주요 진료항목을 서울특별시수의사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동물병원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정해진 주요 진료항목별 진료비를 진료서비스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동물병원 개설자는 제2항에 따라 주요 진료항목별 진료비를 표시하고

자 할 경우 반려동물 소유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의 정착을 위하여 시와 관련 협약을 체결한 동물병원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반려동물 주요 진료 항목별 진료비 게시에 필요한 표시장비 등의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제5조(재정지원)에 따라 반려동물 주요 진료항목별 진료비 게시에 필요한 표시장비 등의 설치비용 지원을 위한 비용 발생
 - 제1조(목적)를 비롯한 다른 조항들은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29,5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동안 29,500천원으로 연평균 5,9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발생할 수 있으며, 물가상승률 미반영
 - 서울시 관내 동물병원은 2020년 10월 현재(879개)에서 이후에도 증감이 없는 것으로 가정
 - 협약기관이 매해 새로 추가발생할 수도 있으나 본 추계에서는 시행 1차년도에 모든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협약기관 수는 예측이 곤란하나,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관 협력을 통한 내장형 동물등록 활성화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의 수가 589개소(’20.7월 기준)임을 감안할 경우 절반수준인 295개소의 동물병원이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협약에 참여하는 것으로 가정
- ※ 한국소비자연맹이 서울경기 동물병원 50개소를 조사한 결과(2019) 18%가 진료비용 게시중
- 반려동물 주요 진료항목별 진료비 게시에 필요한 표시장비는 다양한 형태가 있으나 현 조례안에서는 형태와 소재 등이 제시되지 않아 지원단가를 정하기 어려워, 개소당 1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

※ 현재 반려동물 진료비용 자율표시제 시범실시중인 경남 창원외의 설치비용부터 기존 개별적으로 설치 운영중인 개별 동물병원의 사례, 나라장터 내 검색가능한 표지판 가격, 각종 인증 현판 제작비용 등을 참고하여 10만원으로 가정

○ 상세 비용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표시장비 설치 비용 지원 비용(조례안 제5조)	29,500	-	-	-	-	29,500
	소계(b)	29,500	-	-	-	-	29,500
□ 총 비용(b-a)		29,500	-	-	-	-	29,500

○ 표시장비 설치 비용 지원 비용 ≙ 29,500천원

$$\begin{aligned}
 & - \text{표시장비 설치 비용 지원 비용} \\
 & = \text{지원단가} \times \text{지원대상} \\
 & = 100,000\text{원} \times 295\text{개}
 \end{aligned}$$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주 무 관 채소영

☎ 02-2180-7942

e-mail : liz1998@seoul.go.kr